

2022년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전라북도 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지원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전라북도 내 창업기업의 우수제품 전자상거래 판로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우수기업 육성

□ 지원대상 : 도내 온라인 유통사 입점 희망기업(창업 7년 이내)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II 신청 및 접수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및 회계』 등 관계법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2.6.23.(목) ~ 7.18.(월), 18:00까지

※ 유의사항

-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 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2)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신청이 완료됨(접수 신청 완료 확인 바랍니다. 제출 완료와 첨부파일이 없는 기업은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 한 것으로 보지 않음)
- 3)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수	각 1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1부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대표자 신분증	필수	-	
2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필수	-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매출, 고용 필수	매출'20~21년도 (최근 2개년) 고용: 22년 (현재기준)	
	매 출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고 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수 출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계약서, 해외 특허등록서, 국제인증서, 국제협약서 등
	투 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
5	■ 기업홍보물 및 기타제출서류	선택	해당자	

○ 제출서류 발급절차 안내

분류	제출서류명(사본 가능)	발급처
필수서류	㉓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㉔-1 국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㉔-2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㉕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㉖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 대표자 직접 신청시 생략 가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전라북도 창업정보 플랫폼 온라인 제출) ☞ event.jbci.or.kr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자료(사업신청 공지사항 참조)

-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 '신청하기' 선택 →
- ④ 기본정보 입력(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 → ⑤ 신청서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파일형식 PDF) →
- ⑥ '온라인 접수' 제출 → ⑦ '신청-접수확인' 메뉴 선택 → ⑧ 신청정보 (신청사업명, 이름,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 → ⑨ '접수현황확인'

Ⅲ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이며, 업력 7년 이내(15.6.23~22.6.23)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의 자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6월 23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15.6.23~)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부등기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사업자(개인·법인)를 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제외대상

①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마감일(22.5.25.)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라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마감일(22.5.25.)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⑥ 중앙정보,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사업화 기 지원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 (동일 창업아이템)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기업)

⑦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창업인정 기준

※ 동종 및 이종업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사업승계 제외)

○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IV 지원내용

□ 지원기간 : 4개월 이내(협약일 ~ 2022. 11. 30)

□ 지원내용

○ 전자상거래* 입점비용(판매수수료 및 입점기획, 프로모션 등)

* 카카오페이커스, 롯데온 등 대형 및 중소형 유통사 입점 지원 예정

- 최대 금640만원지원(기업 자부담 2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

총사업비	지원금	창업기업 자부담금
		현금
800만원 100%	640만원	160만원
	80%	20%

○ 품평회, 제품기획 컨설팅 등 입점에 필요한 과정 지원

○ 전자상거래 입점 역량 강화 교육

○ 후속지원 : 참여기업 중 유통사 추천 또는 성과 우수 기업, 창업대전 연계 라이브 커머스 프로모션 후속 지원

V 평가 및 선정

□ 선정절차 : 총 2단계 평가(내부심사 → 품평회)를 통해 최종선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확정일정 아님

① **참가자격 검토(요건검토)** :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유통사 내부 심사** : 온라인 유통사별 참가기업 제품 내부심사(1달 내외 소요)

- 창업기업의 사업신청서(기업소개서)를 통해 제품 평가
- 온라인 유통사별 전문 MD가 상품성, 경쟁력, 입점 적합성 및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소비자 수요조사 및 상품 사용성 진단 등 평가
- 입점 사전 브랜딩 및 상품 테스트 등 평가

③ **1차 합격기업 발표** : 1차 합격기업 대상 품평회 일정 안내 및 참석 요청

④ **최종선정품평회** : 온라인 유통사 MD 입점기업 제품 품평 평가·최종선정

- 창업기업의 제품 품평 및 상담을 통한 **창업 제품 평가**
- 상품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입점에 적합한 제품보유 기업 **최종 선정**

⑤ **선정 결과 발표 및 협약** : 선정결과 안내 및 협약 진행

⑥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고도화 역량 교육, 후속지원****

* 카카오메이커스, 롯데온 등 대형 및 중소형 유통사 입점 지원 예정

** 참여기업 중 유통사 추천 또는 성과 우수 기업은 창업대전 연계 라이브 커머스 프로모션 후속 지원

⑦ **사업비 지급** : 참여기업 입점 증빙자료 제출, 혁신센터 검토 후 지원비 지급

VI 기타 참고사항

□ **접 수 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페이지(event.jbci.or.kr)

□ **사업문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육성팀 ✉ lly@ccei.kr ☎ (063) 220-8924

VII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작성·제출하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주관기관(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대상 기업은 반드시 제출을 응해야 하며, 불응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품평회 평가는 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협약을 포기할 경우 협약기간 2개월 전에 센터에 사전 안내해야 하며, 사전 안내가 없을 경우 추후 센터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증여	개인 / 법인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여부 무관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
				이종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1.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3.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4.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5.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6.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부도.파산 2년)
7.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